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8
----------	-----

2023. 6. 1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6. 1. 강남구청장(가족정책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6. 13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복지생활국장 이호현)

- 가.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저출산,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.
- 나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위탁운영)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

○ 필요성

-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·운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○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○ 수탁재산의 관리

○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신규위탁)

○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: 5개소

연번	아파트명 (소재지)	세대수	준공일 (예정)	어린이집		위탁기간 (예정)	비 고
				면적(m ²)	정원(명)		
1	수서행복주택 A2 (자곡동 138-2)	1,080	2023.12월	894.09	127	2023. 12. ~ 2028. 11.	무상임대 (신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)
2	개포주공1단지 (개포동 660-4)	6,702	2023.11월	507.61	73	2023. 11. ~ 2028. 10.	
3				569.47	82		
4				454.30	65		
5				569.47	82		

마. 위탁기간 : 5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경쟁

사. 수탁자 선정방법 :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· 선정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○ ㄷ제12조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
2. 삭제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24.>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8. 12. 24., 2020. 12. 29.>

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제19조2

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.

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
2.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

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

제55조의2(주민공동시설)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특성,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.

1. 1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 : 세대당 2.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
2. 1,000세대 이상 :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

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,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

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3. **500세대 이상** :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, **어린이집**, 주민운동시설, 작은도서관, 다함께돌봄센터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

제17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② 제1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임명·해임하고,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·해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제5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재계약 하는 경우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경위

○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설치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사무를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1)에 따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
○ 본 동의안은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 신규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음.

1) 제5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재계약 하는 경우

<표> 신규 국공립어린이집

연 번	아파트명 (소재지)	세대수 (명)	준공일 (예정)	어린이집		위탁기간 (예정)	비고
				면적(㎡)	정원(명)		
1	수서행복주택 A2(자곡동)	1,080	23.12월	894.09	127	23.12~28.11	무상임대 (신규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의무설치)
2	개포주공1단 지(개포동)	6,702	23.11월	507.61	73	23.11~28.10	
3				569.47	82		
4				454.30	65		
5				569.47	82		

2 민간위탁의 필요성 검토

-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및 육아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- 그러한 의미에서 어린이집 운영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, 이에 적합한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- 다만 집행부는 수탁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, 또한 선정 이후에도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임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6. 1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보육지원과

1. 제안이유

- 가.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저출산,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.
- 나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동의내용 :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

○ 필요성

-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·운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- 수탁재산의 관리
 -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- 라. 위탁시설 개요(신규위탁)
-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: 5개소

연번	아파트명 (소재지)	세대수	준공일 (예정)	어린이집		위탁기간 (예정)	비 고
				면적(m ²)	정원(명)		
1	수서행복주택 A2 (자곡동 138-2)	1,080	2023.12월	894.09	127	2023. 12. ~ 2028. 11.	무상임대 (신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)
2	개포주공1단지 (개포동 660-4)	6,702	2023.11월	507.61	73	2023. 11. ~ 2028. 10.	
3				569.47	82		
4				454.30	65		
5				569.47	82		

- 마. 위탁기간 : 5년
-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경쟁
- 사. 수탁자 선정방법 :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· 선정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관 계 법 령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
2. 삭제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24.>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8. 12. 24., 2020. 12. 29.>

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제19조2

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.

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
2.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

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

제55조의2(주민공동시설)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특성,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.

1. 1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 : 세대당 2.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
2. 1,000세대 이상 :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

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,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3. 500세대 이상 :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, 어린이집, 주민운동시설, 작은도서관,
다함께돌봄센터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

제17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② 제1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임명·해임하고,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·해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제5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재계약 하는 경우